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의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 >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659호)

2026. 3.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한규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18.
3. 회부연월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기술 수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기설비 사용전점검과 사용 중에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에서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 점검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에서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조성한 것으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전기를 공급하기 전에 수검자의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며, 일반용전기설비의 수검자가 기금 조성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기금에서 전액을 지원받게 되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전기시공업체들이 현장 전기설비 시공을 제대로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경우가 허다하여 불필요한 인력·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수검자에게 점검 비용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전점검 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전환하고,

전기시공업체들의 전기설비 시공 품질 향상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에 대한 비용을 수검자가 부담하도록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 4. (생략) ② (생략)	제42조(수수료 등) ①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u>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u> <u>을 받으려는 자</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2조제1항¹⁾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기안전공사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9조제8호²⁾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이

1)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기사업법」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하 “전력기금”)에서 지출하고 있어 국가가 점검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전기안전공사는 전력기금에서 지출하는 ‘전기설비안전점검’³⁾ 사업을 수행 중이며 그 중 내역사업인 ‘사용전점검’은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 약 149억원이 집행되었음.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의 재원을 전력기금이 아닌 수검자에게서 징수하는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하여 수익자인 수검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은 그 대상이 명확하고 안전한 전기설비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수검자가 직접 향유하는 것이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국가 재정에서 부담하지 않고 수익자가 직접 내는 수수료로 점검비용을 충당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전력기금의 수입이 대부분 전기사용자 전체에 부과하는 부담금⁴⁾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3) 2023년까지의 세부사업명은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이었으나 2024년 사업수행부터 사업명이 변경됨.

4)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에 사용하는 자에게는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전점검 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화함으로써 전국민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전기사공업체가 사용전점검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함으로써 일부 업체가 현장 시공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사용전점검을 신청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업체의 책임성을 확보하여 인력·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용전점검 대상이 되는 일반용전기설비는 주택 등 소규모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설비에 해당하므로, 국가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며, 사용전점검 이후 전기설비를 사용하게 되어 사용자가 새로운 전력기금 조성에 기여⁵⁾하므로 현행과 같이 기금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기설비 사용자는 매달 전기사용 요금의 1천분의 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력기금에 납부함.

문 의 처
02)6788-5533